

의 불법 판매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금번 2005년 4월 13일에 일반조건 14조의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공지함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주요 개선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Ofcom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에 부합하는 실무규약(codes of practice)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
- 일몰규정: 수정 조항은 발효 2년 이후에 규정 유지의 당위성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폐지됨
- 유선통신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실무 규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판매 및 마케팅에 관한 실무규약을 제공할 의무

한편, Ofcom은 상기 협약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전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등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은 경쟁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Ofcom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자료:

- [1] Ofcom, Protecting citizens- and consumers from mis-selling of fixed-line telecommunications services(notification of modification to a general condition), 2005. 4. 13
- [2] 오기환, 「영국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추진」,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6권13호, 통권351호, 2004. 7. 16

---

## 정보통신개발을 위한 ODA의 현황과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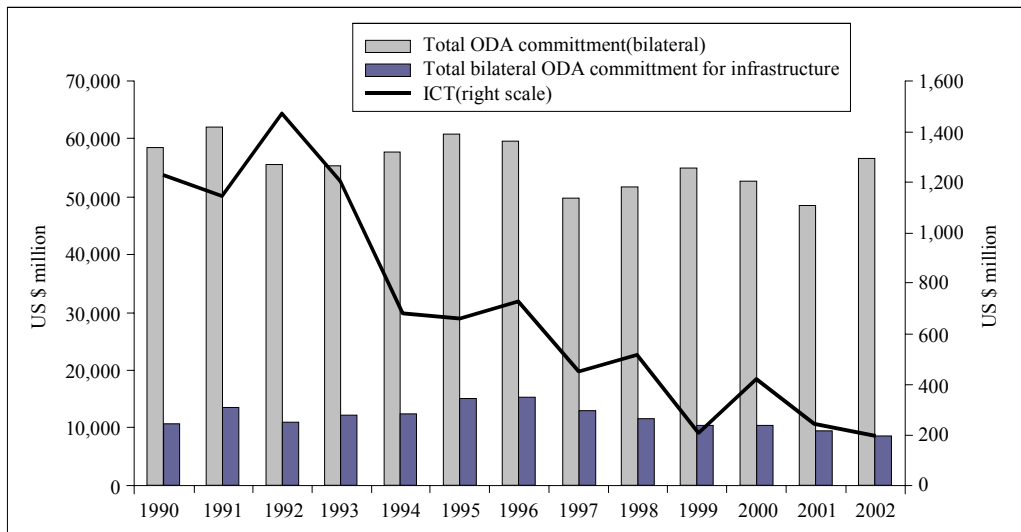
국제협력연구실 책임연구원 김태은  
(T. 570-4041, lmy94@kisdi.re.kr)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Millenium Development Goal(MDG)의 달성을 위한 정보통신부문의 개발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전 세계가 같이 누리고자 하는데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재원의 조달이다. 2003년 세계정보사회 정상회담(WSIS)은 이와 관련하여 재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UN Task Force

on Financial Mechanism for ICT for Development)을 설립하였으며, 본 자료는 이의 활동과 관련한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은 민간부문의 투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위한 환경과 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전세계 ODA의 95%를 점하는 OECD의 DAC 국가들의 ODA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DAC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는 냉전이 종료된 후 일시적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나, 다양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와 국제지위 상승을 위한 일본의 ODA확대를 통해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1990년대에는 1992~1997년간에는 20% 정도 급감하고, 1998, 1999년에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의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Moterrey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DAC의 많은 국가들이 ODA의 증액을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2년간 12%의 증가세를 보였고, 2006년까지는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AC 국가들의 GNI대비 ODA 비중의 축소와, DAC 국가수의 확대 대비 ODA 액수의 증가 등을 볼 때, 실질적인 증가는 수치보다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Trends in Bilateral ODA Commitments to Economic and ICT Infrastructure



ICT에 대한 ODA를 파악함에 있어 기타 ODA에 포함된(embedded) ICT관련 부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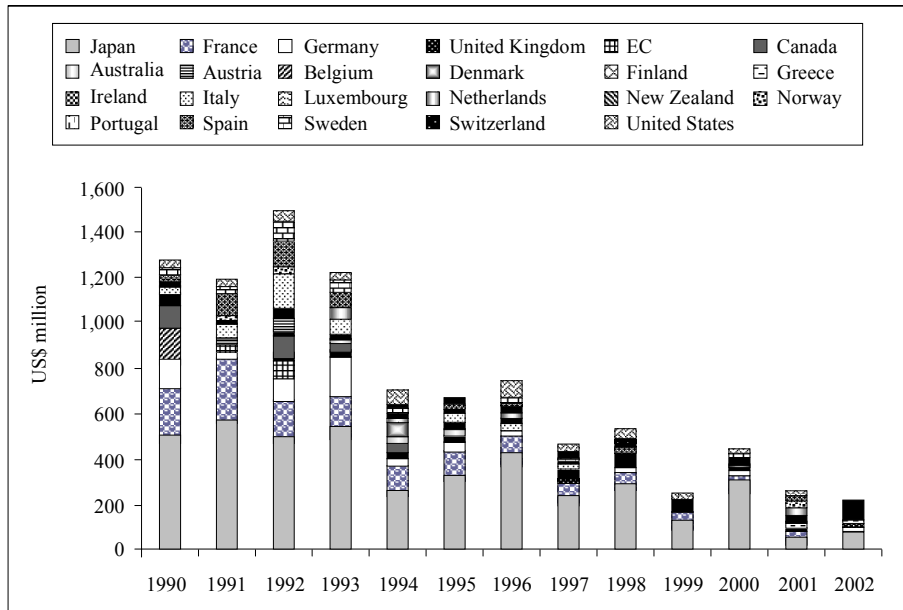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IT infrastructure(통신정책 및 행정/경영, 정보통신, 방송)로 분류되는 ODA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T 인프라에 대한 양자간 ODA는 1990년의 US\$ 1.2 billion, 1991년 US \$1.5 billion에서 2002년에는 US\$ 194 Million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ICT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첫째는 ICT 인프라 투자에 대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현실과 기대,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T가 주류화 되면서 독립적인 ICT 인프라 ODA가 아닌 경제, 사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ODA에서 많은 부문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현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외에 아시아 및 중남미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체적인 ODA의 방향이 social sector로 전환되었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IT 인프라에 대한 ODA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통신(Telecommunications)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나(82%) 1999년 이후에는 방송의 비중과 Telecommunications의 비중이 각각 40%를 점하고, 나머지가 정책 및 경영관련분야로 바뀌었다. ODA 수혜국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1990~2002년의 ICT 인프라에 대한 ODA의 50%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ICT인프라를 위한 ODA를 방식별(증여, 차관, 기술협력, 자본투자)로 살펴보면, 1990년에는 ODA의 60%가 차관(Loan) 방식이었지만 2001년에는 38%, 2002년에는 23%로 낮아졌으며, 반면 증여(Grants)의 비중은 20%에서 40%로 두 배 증가하였다.

양자간 ODA 외에도 OECD DAC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자간 ICT 특화 프로그램의 시행, World Bank의 InfoDev, GDLN, DGF, GKP 등 국제 다자간 공여 이니셔티브에의 참여, 개발프로그램에 있어서 ICT의 주류화(mainstreaming) 등이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의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를 통해 해당국의 ICT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타 공적지원(Other Official Flow)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DAC 국가별로 ICT 인프라 ODA 기여도를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이 프랑스, 독일, 영국의 순이다. 1990년대에 걸쳐 ODA 전체나, ICT 인프라 ODA에 있어서나 최대 원조공여국이었던 일본의 ODA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미국에게 1위의 자리를 내어 주었지만 IT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의 일본의 기여도는 가장 높으며, 나아가 일본은 2002년 7월 오키나와의 G8 정상회담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포괄협력책(Comprehensive Cooperation Package)을 발표하고, 5년간에 걸쳐 US\$ 15B을 ODA 및 비 ODA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림 2) Bilateral Donors' Commitments for ICT Infrastructure



참고자료:

- [1] Financing ICT's for Development-Efforts of DAC members; Review of Recent Trends of ODA and its Contribution, Report to the UN Task Force on Financial Mechanism for ICT for Development(TFFM), DAC, OECD, 1995
- [2] World ICT Visual Data Book 2004, 일본 ITU협회, 2004